

外換의 會計處理에 關한 考察

—財務諸表의 外貨表示를 中心으로—

朴 勝 義

<目 次>

- I. 序 言
- II. 歷史的인 發展過程
 - 가. 美國의 歷史的인 發展過程
 - 나. 우리나라의 歷史的인 發展過程
- III. 財務諸表의 外貨換算方法
 - 가. 美國의 外貨換算方法
 - 1. 貸借對照表項目
 - 2. 損益計算書項目
 - 나. 우리나라의 外貨換算方法
 - 1. 貸借對照表項目
 - 2. 損益計算書項目
- IV. 換率差損益에 對한 會計處理方法
 - 가. 美國의 換率差損益에 對한 會計處理方法
 - 나. 우리나라의 換率差損益에 對한 會計處理方法
 - 1. 「意見書」意見 第3號의 內容
 - 2.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關한 規程」의 內容
 - 3.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關한 規則」의 內容
 - 4. 「法人稅法 施行令 第38條의 2」의 內容
- V. 公開表示의 基準
 - 가. 美國의 公開表示의 基準
 - 나. 우리나라의 公開表示의 基準
- VI. 結 言

I. 序 言

外換(Foreign Exchange)은 外貨의 交換關係를 取扱하는 銀行 및 商品을 輸出入하고 外國에 投資를 하며 外國에 支店이나 子會社를 設置하여 經營活動을

筆者：忠南大學校 法經大學 經營學科 專任講師

營爲하거나, 기타 여러 國家에 送金을 하거나 受金을 하는 등의 기타 여러가지 外國營業活動에 從事하는 企業에게는 重大한 關心事인 것이다. 그리고 어느 國家이던 간에 會計擔當者는 外貨로 表示된 計定이나 試算表, 財務諸表 등의 資料를 國內通貨로 換算하여 表示할 必要性이 있을 때에 外換의 會計處理에 따르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解決하여야 할 課題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異種貨幣間의 交換을 위한 道具로서 換率(rate of exchange)이라는 것이 使用된다.

그러면 이러한 두나라 以下の 通貨가 介入됨으로서 惹起된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한 各種 問題點들을 檢討하기 위한 本稿의 主要目的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財貨·用役 그리고 資本財를 輸入하는 데에 關聯된 外貨의 換算에 대한 問題點들을 檢討하기 위함과,

둘째로, 母子會社間의 關係에 있어서 外國子會社의 經營活動을 決算時에 報告하려 할 때에 各種 會計資料에 나타난 外貨金額을 換算하는데에 있어서의 問題點들을 檢討하기 위함과,

셋째로, 이와 같은 上記의 두가지 檢討目的을 異種貨幣間의 本質的인 여건을 考慮함이 없이 劃一的으로 取扱할 수는 없다. 그 理由는 異種貨幣라고 하더라도 對外的으로 貨幣價値가 比較的 安定된 立場에서 外貨의 換算을 다루는 「달러」對 「파운드」의 경우와 比較的 不安定된 立場에서 이를 다루는 「달러」와 우리나라 「원」貨와의 경우는 다루어지는 與件이 多角的인 立場에서 다르기 때문에 同等하게 取扱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相異한 與件을 念頭에 두고 外換의 會計處理에 있어서 發生하는 各種 個別的인 問題點을 二次元的인 立場에서 檢討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檢討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方法을 考察함에 있어서 外貨의 換算에 대한 會計處理는 다른 어느 會計分野보다도 適用되는 理論과 實務面에 있어서 여러가지 複雜性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이 外換의 會計處理에 있어서 論議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外換의 會計處理에 관한 研究活動이 다른 어느 會計分野보다도 年淺한 關係로 지금까지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다만 外國子會社나 支店의 財務諸表를 適切한 換率에 의하여 機械的으로 換算하는 問題만을 取扱하여 왔을 뿐, 이에 따른 換算方法 등 細部的인 問題點을 별로 考慮하지 않고 거의 劃一的인 方法에 의하여 處理하여 왔다는 점이다.

둘째로, 國際的인 經濟與件의 多角的인 變化로 인하여 外換의 會計處理와 關聯하여 各國에 特有한 立場에서 상당히 複雜性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즉, 美國의 경우만 보더라도 第二次世界大戰 以後에 多數의 美國會社들이 그들의 國際的인 經營活動을 增大시켰는데 그 結果로 그들 자신의 企業規模가 漸次的

으로 擴大되었고 他國의 企業을 買受하는 데에 다른 投資를 顯著하게 增大시켰다. 따라서 이와 같이 外國에 대한 經營活動의 增大와 더불어 資金調達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多數의 美國會社들은 外國의 現金借款에 상당히 依存하여 오기도 했다. 또 다른 發展的인 事實은 美國은 특히 1971年과 1973年에 「달러」貨의 平價切下로 인하여 對外貨幣價値가 현저하게 低下되었다. 이에 따라 平價切下(devaluation)와 平價切上(revaluation)에서 交錯되는 各國에 特有한 外換의 會計處理問題에 대하여 各國은 解決할 方案을 獨目的으로 模索하면서 各種 外換政策을 樹立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外國子會社의 財務諸表를 換算하는 데에 있어서의 各種 換算方法을 具體的으로 論議한다는 것은 妥當性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實務上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財務諸表의 外貨表示에 관한 各種 換算方法을 論議하기 전에 外貨로 表示된 計定金額이나 試算表 또는 財務諸表를 換算하는 데에 考慮하여야 할 가장 重要한 問題로서 當初에 會計記錄을 할 때에 그러한 會計記錄의 基礎가 되는 會計概念과 會計基準이 이 比較可能的인 統一性을 어느 정도까지 기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會計概念과 會計基準의 統一化問題는 財務諸表의 外貨表示를 하는 目的이 前述한 本稿의 目的에서 提示된 바와 같이 어디에 重點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財貨·用役 그리고 資本財를 輸出入하는 데에 關聯하여 作成된 財務諸表의 外貨表示와 母子會社問의 關係에 있어서 外國子會社의 財務諸表를 聯結하는 것과 關聯하여 作成된 財務諸表를 換算하는 데에 目的이 있는 데에 대하여는 一般的으로 會計概念 및 會計基準의 統一化를 強調하고 있는 傾向이며, 단순히 獨立된 企業의 情報提供을 위한 것과 關聯하여 作成된 外貨表示財務諸表를 換算하는 데에 目的이 있다면 會計概念 및 會計基準의 統一化問題를 包含시키지 않고 있는 傾向이다. 그러나 會計概念 및 會計基準의 統一化問題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도 本論稿 目的中 셋째번에서 提示된 바와 같이 「달러」對 「파운드」의 경우와 「달러」對 「원」貨의 경우와는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한 接近方法에 있어서 差異點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上記한 바와 같이 多角的인 經濟與件의 變化結果로서 外換의 會計處理에 관한 傳統的인 主要課題가 部分的으로 그 適切性을 잃고 있으며, 傳統的인 外換의 會計處理節次가 더 이상 適用되지 못할 程度로 疑心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與件下에 各國의 會計擔當者는 外換의 會計處理에 관한 여러가지 問題點에 부딪혔을 때에 會計擔當者 스스로가 特殊한 경우에 影響을 미치는 諸般與件과 規定에 대하여 익숙함으로써 報告되는 財務諸表가 各種利害關係者에 대한 情報傳達에 있어서 誤解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本論稿는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美國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로 二大別하여 다음과 같은 事項에 대하여 重點的으로 論議하고자 한다.

첫째로,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한 歷史的인 發展過程을 살펴보고

둘째로, 換率과 換率差損益의 本質的인 面에 대한 考察과 아울러 財務諸表의 外貨表示에 있어서의 各種 換算方法들을 論議하며,

셋째로, 換率差損益에 대한 會計處理方法을 具體的으로 檢討할 것이며,

넷째로, 財務諸表의 外貨表示에 있어서 必然的으로 提起되는 公開表示의 範圍에 대하여 檢討하는 順序로 論하고 자 한다.¹⁾

II. 歷史的인 發展過程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한 本質的인 問題를 다루기 前에 먼저 이에 대한 歷史的인 發展過程을 더듬어 본다는 것은 상당히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經濟與件의 變動에 따른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한 發展過程은 各國家別로 差異가 있기 때문에, 本論稿는 이에 대해 便宜上 美國의 發展過程과 우리나라의 發展過程으로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가. 美國의 歷史的인 發展過程

財務諸表의 外貨表示에 있어서의 評價基準 또는 換算基準등의 會計處理方法에 대한 論議는 1931年과 1934年에 發刊된 美國會計士會(AIA)의 會計節次特別委員會에 의하여 最初로 다루어지기 始作하였다. 그 당시에 會計節次特別委員會의 研究調查活動은 그 후에 1939年에 發表된 「會計調查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 : 略하여 ARB라 함) 第4號의 作成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또한 1949年에 많은 國家들은 國際經濟的인 與件의 變化에 따라 平價切下를 斷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平價切下를 招來케 한 經濟的인 與件의 變化는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새로운 問題點을 提起하기 始作하면서 論爭의 對象이 되었다. 이에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의 會計研究部는 外換의 會計處理에 있어서 平價切下가 이에 미치는 影響을 備忘錄的인 形式으로 發刊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에서 評價基準 또는 換算基準등의 外換의 會計處理方法을 具體的으로 提示한 것은 美國公認會計士會에서 1953年에 發表한 「會計研究公報」(ARB) 第43號인 「海外營業活動과 外換」(Foreign Operations and Foreign Exchange)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즉, ARB 第43號에서는 聯結財務諸表를 作

1) 本論稿의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한 考察은 다음의 論文 및 著書에 힘입은 바 크다.
Leonard Lorensen, *Accounting Research Study*, No.12, "Reporting Foreign Operations of U.S. Companies in U.S. Dollars", AICPA, 1972, pp.1~114.
George C.Wat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nd Transla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0), pp.1~31.
FASB, FASB Discussion Memorandum, February, 1974, pp.1~140.
H.A. Finney & H.E.Miller, *Principles of Accounting, Advanced, Foreign Exchange, Modern Asia Editions* (5th edition), pp.498~522.

成하는 데에 있어서 外國子會社의 財務諸表를 外貨換算하는데 使用되어지는 節次에 대하여 記述하고 있다. 특히 ARB 제43호는 財務諸表의 外貨換算方法으로서 “流動性·非流動性法”(current-noncurrent method)에 의한 것을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流動性·非流動性法에 의한 外貨換算方法은 國際的 經濟規模의 膨脹에 따른 與件造成에서 外換의 會計處理制度의 明瞭한 體系의 樹立에 寄與하지 못한 것은 事實이다. 따라서 1956년에 外貨表示財務諸表의 換算에 대한 會計處理方을 組織的이고도 分析的으로 研究하기 위한 最初의 試圖로서 「헐워스(Samuel R. Hepworth)教授가 「海外營業活動報告」(Reporting Foreign Operation)라는 題目下에 論文을 發表하였다. 그는 換算方法으로서 ARB 제43호에서 示唆한 바 있는 “流動性·非流動性法”에 의하기 보다는 “貨幣性·非貨幣性法”(monetary-nonmonetary method)에 의한 것을 勸奨하고 있다. 그 후에 1960년에 發表된 「全國會計士協會」(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 略하여 NAA라 함)의 調查報告書도 換算方法으로서 貨幣性·非貨幣性法에 의한 것을 示唆하고 있다.

1971년에는 美國의 平價切下로 인한 換率의 廣範한 再調整등, 國際的 經濟與件의 變動으로 인하여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의 會計原則審議會(Accounting Principles Board: 略하여 APB라 함)에서는 外換의 會計處理上의 各種 問題點과 이에 대한 解決方案을 熟考한 끝에 「妙案」(Exposure Draft)을 發表하였다. 뿐만 아니라 繼續하여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의 會計原則審議會(APB)에서는 意見書 第22號와 第30號를 통하여 外貨表示財務諸表의 作成과 關聯하여 公開表示의 範圍 및 換率差損益의 會計處理方法에 대하여 意見を 提示하기도 하였다.²⁾

마지막으로, 最近에 美國에서 發表된 外換의 會計處理에 關한 報告書는 「外貨換算에 있어서의 會計情報의 公開」(Disclosure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Information)라는 題目下에 1973年 12월에 發表된 財務會計標準審議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略하여 FASB라 함)³⁾의 「財務會計標準報告書 第1號」(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No.1)이다. 또한 FASB에서는 1974年 2月 21일에 外換의 會計處理과 關聯하여 發生되는 여러 問題點에 대한 分析資料로서 「財務會計標準審議會議

2) FASB, FASB, *Discussion Memorandum*, February, 1974, "Summary of Selected Accounting Literature", Appendix B, pp.1~3.

3) FASB는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略字로서 會計原則審議會(APB)의 第4 報告書以後에 AICPA의 獨立된 機關인 FAF(Financial Accounting Foundation)가 APB를 代身하여 새로운 機構로서 組織되었다. 이 FAF內에 財務

事錄」(FASB Discussion Memorandum)을 發表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議事錄은 「財務會計標準報告書 第1號」를 發表하기 以前에 公聽會에 쓰여질 資料로서 準備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議事錄에서 特記할 만한 事實은 FASB나 그 所屬團體도 外換의 會計處理에 關聯된 諸般 問題點 및 內包된 意味에 대하여 어떠한 結論에도 到達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나. 우리나라의 歷史的인 發展過程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처음으로 始作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成功的으로 推進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에 必要的인 資金調達이 先決問題로서 台頭되기 始作하였다.

經濟開發은 언제나 그것을 遂行할 수 있게 하는 投資財源이 造成되어야 하며, 이것이 마련되지 못하면 計劃대로 經濟開發이 推進되기 어렵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0年代初에 經濟開發을 위한 內資動員을 할 수 있을 만한 資本市場이 育成되지 못하였으며, 株式과 社債의 發行과 國公債를 直接 證券市場에서 起債하는 등의 直接金融制度의 受容態勢는 바람직한 것이 못되었다. 따라서 企業은 施設의 擴張 및 改替등의 施設資金調達 및 運轉資本의 調達을 위해서 美國·日本·西獨등으로 부터 外資導入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結果, 政府는 外資導入業體의 數와 外資導入 金額이 반대하여 짐에 따라, 經濟의 自立과 그 健全한 發展 및 收支의 改善에 寄與하는 外資를 効果的으로 誘致·保護하고, 이러한 外資를 適切히 活用·管理함을 目的으로 1966年 3月 3日 法律 第1802號로 「外資導入法」을 制定·公布하였다.

이와 같이 政府의 外資導入政策과 더불어 外國企業이 漸次的으로 많이 들어 오기 始作했고, 輸出促進政策에 따른 輸出貿易으로 우리나라의 企業이 海外로 많이 進出함으로써 두나라 以上の 通貨의 介入, 相異한 換率의 適用問題등 換

會計標準審議會(FASB)가 設置되었으며, 1973年 7月 1日부터 本格的인 作業을 實施하였다. 또한 FASB에는 Wheat 委員會와 Trueblood委員會라는 두개의 所屬 團體가 있다.

參考로, FASB는 30個의 案件中에서 7個의 主要案件을 研究하기 始作하였는데 이를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 (1) 財務會計의 目的
- (2) 外貨評價에 關한 會計處理
- (3) 持株會社의 會計處理
- (4) 重要性의 原則에 關한 會計處理
- (5) 「리스」(lease)에 關한 會計處理
- (6) 天災地變, 外國投資, 自家保險등으로 發生하는 特別損失의 會計處理
- (7) 試驗研究費, 創業費 및 立地變更등의 會計處理

率變動이 財務諸表에 莫大한 影響을 주게 됨에 따라 外貨換算의 必要性이 台頭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國際的 經濟與件의 造成에 附合할 만큼,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한 研究結果나 實績은 未洽한 實情이었으며, 더욱이 이 方面에 適用될 수 있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 確立되지 못하였다. 다만 稅務政策上의 要請에서 法人稅法 第38條의 2에 「外貨債務에 대한 評價損益」이라는 斷片的인 規定만이 1971年 12月 30日에 新設되어 存在할 程度였다. 그 以後, 1974年 6月 18日에 公認會計士들의 모임인 韓國公認會計士會(KICPA)에서는 「外貨資產 및 外貨負債의 評價와 換率差損益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意見書」意見 第3號를 發表하였다. 이에 의하면 評價基準으로서 貨幣性·非貨幣性法에 의하여 財務諸表의 項目을 貨幣的項目과 非貨幣的項目으로 區別하고, 貨幣的項目에 대하여는 流動換率을 適用하여 評價하고, 非貨幣的項目에 대하여는 歷史換率을 適用하여 評價하도록 劃一的으로 提示함으로써 各個의 項目이 지니는 獨特한 性格을 거의 度外視하고 있다. 물론, 在軍資產의 評價에서는 取得日 現在의 換率과 決算日 現在의 換率中에서 低率인 것을 適用하도록 提示하고 있으나, 結果的으로 貨幣性·非貨幣性法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것 以外에도 換率差損益의 會計處理에 대하여도 提示하고 있으나 理論과 實務面에서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을 制度的으로 確立하자는 論議가 繼續하여 오던 중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經濟與件造成이 다른 會計分野와 더불어 이 方面에 대한 研究에 拍車를 加한 것으로 보인다.

1972年 8月 3日 經濟借置後에 우리나라는 企業의 公開와 株式의 分散을 促進하여 國民의 企業參與意識을 높이고 資金調達의 圓滑을 기할 수 있는 役資與件을 造成함으로써 企業의 財務構造를 改善하고 資本의 健全한 育成을 圖謀하여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코자, 1972年 12月 30日 非常國務會議에서 「企業公開促進法」을 새로이 制定·公布하였다. 또한 1968년에 制定·公希된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을 改正하여 1973年 1月 5日부터 이를 施行토록 하였다.

이러한 經濟與件造成은 褪色한 「企業會計原則」을 改正할 必要性을 가져 오기에 이르른 것이다. 따라서, 各種 利害關係者들의 經濟的 意思決定目的에 貢獻할 수 있는 財務的 情報을 提供하기 위한 새로운 「企業會計原則」을 制定코자 1973年 1月에 從前의 會計原則의 制定方法을 再檢討하기 위하여 證券審證會傘下 「企業會計制度審議分科委員會」를 設置하였으며, 이때에 外換의 會計處理에 관한 方法도 다른 會計分野와 아울러 研究하기 始作하였던 것

이다.

그리하여, 同審議分科委員會는 證券去來法 第126條 8의 規定에 의하여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을 1974年 7月 18日에 大統領令 第7199號로 公希하였다. 同規程中 第32條에 「外貨資産 및 負債의 評價」라는 規定이 挿入됨으로서 外換의 會計處理에 관한 指導原理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同規程中에는 어떠한 換率을 適用할 것인가, 어떠한 評價基準을 使用할 것인가, 換率差損益이 發生한 경우에 이에 대한 會計處理方法등, 外貨表示財務諸表을 作成하기 위한 評價基準이나 換算基準등이 제대로 明示되지 않았다.

그 다음해에 財務部는 1975年 4月 17日에 財務部令 第1098號에 依據,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을 公布하였다. 그러나 同規則 역시 外換의 會計處理에 있어서의 斷片的인 規定만을 羅列해 놓았을 뿐, 財務諸表의 外貨表示에 있어서의 評價基準이나 換算基準등이 具體的으로 明示되지 못하였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會計實務界가 現實的으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傳統的인 計算方法에 따라 財務諸表를 作成하는데 過度하게 치우쳐 單純한 機械的 計算作業에 많은 努力을 浪費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會計의 一般目標가 아닌 租稅目的을 위한 稅務計算과 더욱이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한 研究活動이나 實績이 너무나 未洽한 가운데 이에 관한 規定制定作業이 時急히 促進된 데에 그 原因이 있는 것 같다.

Ⅲ. 財務諸表의 外貨換算方法

決算期末에 外國子會社나 支店의 外貨表示財務諸表를 母會社의 各種 利害關係者에게 報告하기 위하여 換算할 必要性이 있는 경우, 利用되는 換算方法으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方法들이 論議되었다.

- (A) 流動性·非流動性法(current-noncurrent method)
- (B) 貨幣性·非貨幣性法(monetary-nonmonetary method)
- (C) 流動換率法(current rate method)
- (D) 折衷法(hybrid method)

流動性·非流動性法이란 流動資産과 流動負債는 流動換率로 換算하고, 固定資産과 固定負債는 歷史換率로 換算하는 것으로서 固定項目은 原價主義의 評價原則에 의해서 取得日 또는 發生日 現在의 換率로 評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貨幣性·非貨幣性法은 먼저 財務諸表의 各項目을 貨幣性과 非貨幣性項目으로 區分한 다음에 貨幣性項目은 流動換率로 換算하고, 非貨幣性項

目的是 歷史換率로 換算하는 것이다.⁴⁾ 그리고 流動換率法은 모든 資產·負債·資本을 貸借對照表作成日 現在の 換率인 流動換率로 換算하는 것이며, 이는 英國公認會計士會에서 1968년에 勸告한 것으로서 固定資產·資本등의 非貨幣性項目에 대해서도 모두 流動換率을 劃一的으로 適用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것은 마치 時價表示財務諸表를 作成할 때에 貸借對照表作成日 現在の 物價指數로 모두 換算해 버리는 것과 同一한 것으로, 오늘날 貨幣價值安定的 假定下에서 理論的 基盤을 가졌던 歷史的 原價에 의한 會計情報의 有用性이 物價水準의 激甚한 變動으로 인하여 會計情報로서의 職能을 제대로 遂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外換의 會計處理에 있어서의 換算方法도 流動換率로 換算하여야 한다는 主張이다.⁵⁾ 마지막으로 折衷法은 ARB 第43號의 流動性·非流動性法과 APB 意見書 第6號에 의한 貨幣性·非貨幣性法을 折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折衷法은 單一한 方法으로 存在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上記의 二方法을 混雜한 것이다.

그러면 이상의 네가지 方法을 中心으로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의 各項目別로 美國과 우리나라의 換算方法에 대하여 論하고 자 한다.

4) 貨幣性·非貨幣性 項目의 區分에 대하여 이를 資產의 概念에 局限시켜서 分類하여 보기로 한다. 資產의 概念을 用役潛在力으로 理解하고 이를 分類하면 貨幣性資產(monetary assets)과 非貨幣性資產(non-monetary assets)으로 分類하는 것이 資產의 本質을 잘 反映한 分類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分類方法에 따라 각각의 構成內容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貨幣性資產

- ① 現金資產(現金·預金등)
- ② 受取債權(外上賣出金·받을어음·未受金등)
- ③ 短期投資資產(市場性있는 有價證券·短期貸與金등)

(2) 非貨幣性資產

- ① 在庫資產(原材料·商品·製品·在工品등)
- ② 有形固定資產(建物·機械裝置·器具備品·土地등)
- ③ 無形固定資產(營業權·特許權·礦業權등)
- ④ 長期投資資產(關係社有價證券·投資有價證券·出資金·長期貸與金등)
- ⑤ 移延資產(先給費用·創業費·開業費·建設利子등)

(李正浩著, 現代會計理論, 法文社, 1974年, p.213)

5) 最近의 歷史的 原價主義가 批判을 받게 되는 傾向으로 흐르게 됨에 따라 「켄드릭선」은 그의 著書「會計理論」에서 “市場性 있는 有價證券의 價値에 變動이 있을 때, 그것이 客觀的이고 充分한 根據가 있으면 利益 또는 損失로 認識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또한 美國會計學會의 「基礎的 會計理論에 관한 報告書」(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에서도 “報告되는 資產을 現在原價(current cost)로 評價할 것”을 勸奨하고 있다. 특히 同報告書에서는 “歷史的 去來事實에 立却한 情報과 現在價値로 表示한 情報을 同時에 報告할 것”을 勸奨하고 있다. 그 밖에도 「스프라우스」·「무넛츠」는 「會計研究調查」第3號에서 “評價增分に 關하여 그럴만한 充分한 事實이 있다면, 工場 및 設備은 現在の 代替原價로 再表示되어 報告(外部報告)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Ibid., p.178)

가. 美國의 外貨換算方法

1. 貸借對照表項目

貸借對照表 計定科目別 換算方法 比較表

	流動性· 非流動性法	貨幣性· 非貨幣性法	折衷法
〔資 產〕			
I. 流動資產			
(1) 現金預金	C	C	C
(2) 市場性 있는 有價證券	C	C	C
(3) 外上賣出金 및 받을어음	C	C	C
(4) 外上賣出金 및 받을어음에 대한 貸損充當金	C	C	C
(5) 在庫資產	C	H	C
(6) 先給費用	C	H	C
II. 固定資產			
(7) 資產化되는 融資「리스」契約에 따른 債權, 長期 貸與金 및 預置金	H	C	C
(8) 非聯結從屬會社에 대한 先給金	H	C	C
(9) 年金基金, 減債基金, 그밖의 基金	H	C	C
(10) 有形固定資產	H	H	H
(11) 有形固定資產減價償却充當金	H	H	H
(12) 無形固定資產	H	H	H
(13) 移延費用	H	H	H
〔負 債〕			
I. 流動負債			
(1) 外上買入金 및 支給어음	C	C	C
(2) 未支給費用 (給料·賃金등)	C	C	C
(3) 賣買契約에 의해 受取한 先受金	C	H	C
II. 固定負債			
(4) 社債 및 轉換社債	H	C	C
(5) 資產化되는「리스」契約에 따른 債務	H	C	C
(6) 其他의 長期借入金	H	C	C
(7) 移延稅金	H	H	H
(8) 負債性充當金	C	C	C
〔資 本〕			
I. 資本金			
(1) 少數株主持分	H	H	H
(2) 普通株資本金	H	H	H

(3) 優先株資本金	H	H	H
II. 剩餘金			
(4) 資本剩餘金	H	H	H
(5) 利益剩餘金	H	H	H

〔附記事項〕

- (1) 上記의 換算方法에 따른 換率은 一般의으로 適用되는 換率임
- (2) 記號表示; C(Current Rate=流動換率)
H(Historical Rate=歷史換率)
- (3) 流動換率法은 모든 計定科目을 流動換率에 의하여 換算하는 것이므로 別途로 分離하여 記載하지 아니하였음

2. 損益計算書項目

損益計算書 計定科目別 換算方法 比較表

	流動性·	貨幣性·	
	非流動性法	非貨幣性法	折衷法
(1) 賣出額	A	A	A
(2) 賣出原價	A	A	A
(3) 賣出原價中 減價償却費	H	H	H
(4) 一般管理費와 販賣費	A	A	A
(5) 一般管理費와 販賣費中 減價償却費	H	H	H
(6) 營業外收益	A	A	A
(7) 營業外費用	A	A	A
(8) 特別損益	A	A	A
(9) 利益剩餘金	H	H	H
(10) 配當金	C	C	C

〔記號表示〕 A : 平均換率(Average Rate)
H : 歷史換率(Historical Rate)
C : 流動換率(Current Rate)

나. 우리나라의 外貨換算方法

우리나라의 外貨換算方法에 대하여는 前述한 歷史的 發展過程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研究結果나 實績이 未습한 實情이다. 最近에 公表된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關한 規程」이나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關한 規則」도 外換의 會計處理에 關하여 斷片的으로 規定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면 本論稿는 이와 같은 諸般 規定을 통하여, 現在 우리나라에서 一般의으로 쓰이고 있는 外貨換算方法 및 이에 따른 問題點을 分析的인 立場에서 考察하고 자 한다.

1. 貸借對照表項目

韓國公認會計士會에서는 「意見書」를 통하여 「外貨資産 및 外貨負債의 評價와 換率差損益의 會計處理」라는 題目下의 意見 第3號를 發表하였다. 意見書 意見 第3號⁶⁾는 評價基準에 대하여, “貨幣的 項目과 非貨幣的 項目으로 區別한다.”고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內容은 評價基準自體에 대하여 많은 混同을 惹起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財務諸表項目中 어느 項目에 대하여 貨幣的 項目과 非貨幣的 項目으로 區別한다는 것인 지를 具體的으로 提示하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項目全體에 대하여 區別한다는 것인지, 貸借對照表項目만을 區別한다는 것인지, 貸借對照表項目中에서 資産 및 負債에 대하여만 區別한다는 것인 지가 뚜렷하지 못하다. 그런데 同意見의 評價方法에서는 非貨幣性資産으로서, 在庫資産, 固定資産 및 投資資産을 들고 있을 뿐, 이에 대한 具體的인 內容을 提示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評價方法만 하더라도 貸借對照表項目에 대하여만 部分的으로 提示하고 損益計算書項目에 대하여는 전혀 言及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貨幣性項目과 非貨幣性項目의 重要性 區別에 따라 各已 換算方法에 適用될 換率을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貸借對照表 計定科目別 適用換率

〔資産의 部〕	
I. 貨幣性 資産	
(1) 現金資産	C
(2) 受取債權	C
(3) 短期投資資産	C
II. 非貨幣性 資産	
(4) 在庫資産	H
(5) 有形固定資産	H
(6) 無形固定資産	H
(7) 長期投資資産	H
(8) 移延資産	H
〔負債의 部〕	
I. 貨幣性 負債	
(1) 外上買入金 및 支給어음	C
(2) 未支給費用	C
(3) 社 債	C
(4) 長期借入金	C
(5) 負債性充當金	C
II. 非貨幣性 負債	

6) 다음에는 同意見이라 함

- (6) 賣買契約에 의해 受取한 先受金 H
- (7) 移延税金 H
- 〔資本의 部〕= 非貨幣性 資本
- (1) 少數株主持分 H
- (2) 普通株資本金 H
- (3) 優先株資本金 H
- (4) 資本剩餘金 H
- (5) 利益剩餘金 H
- 〔記號表示〕 C : Current Rate(流動換率)
- H : Historical Rate(歷史換率)
- A : Average Rate(平均換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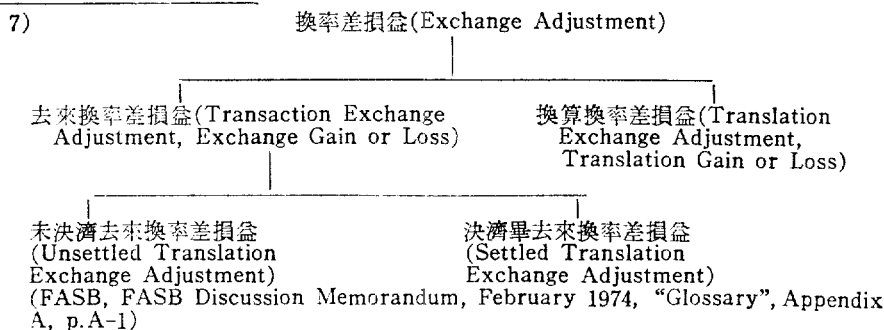
2. 損益計算書項目

損益計算書 計定科目別 適用換率

賣出額	A
賣出原價	A
賣出原價中 在庫商品과 減價償却費	H
一般管理費와 販賣費	A
一般管理費와 販賣費中 減價償却費	H
營業外收益	A
營業外費用	A
特別損益	A
配當金	H

IV. 換率差損益에 대한 會計處理方法

換率差損益(exchange adjustment)이란 商品을 輸出入함으로서 發生된 外貨資產을 回收하거나 外貨負債를 辦濟하는데 있어서 發生時點과 決濟時點間의 換率의 變動으로 인한 利益 또는 損失과 決算期末에 母會社의 利害關係者에게 報告하기 위하여 外國子會社나 支店의 財務諸表을 換算하는 데에 있어서 數個의 各기 다른 換率을 適用함으로서 發生하게 되는 換率變動으로 인한 利益 또는 損失을 말한다. ” 그러던 이에 대한 會計處理方法을 美國과 우리나라의 경



우로 나누어 考察하여 보고 자 한다.

가. 美國의 換率差損益에 대한 會計處理方法

換率差損益에 관한 會計處理方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美國에서도 여러가지 意見이 提示되어 왔으나 이들은 아직 理論적으로나 實務上으로 많은 애로점을 內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換率差損益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美國에서 一般的으로 認定되어 온 見解에 의하면, 外貨資産의 回收나 外貨負債의 辨濟로 부터 생기는 換率差損益은 實現된 損益으로 보며, 外貨로 表示된 計定 또는 財務諸表를 換算함은 생기는 換率差損益은 未實現 損益으로 보고 있다.⁸⁾ 물론, 이러한 見解가 支配로서 的인 것은 최근 數十年에 걸쳐 外國通貨와의 交換에 있어서의 不安 乃至 不確實性和 國際事業自體의 性格變化에 基因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가지 發展의인 事實中에서 注目할 만한 것은 美國의 海外事業活動自體의 性格變化이다. 즉, 1950年代의 中半期 以前까지만 하더라도 美國의 海外事業活動은 그 대부분이 輸出入의 形態를 취하는 가운데 遂行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海外事業活動은 다만 輸出入 活動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多數國에 積極적으로 進出하여 生産·販賣活動을 直接 그 地域에서 展開하는 多國籍企業으로서의 活動舞臺를 廣域化하여 가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러한 多國籍企業의 形態로서 海外에 子會社 또는 支店등이 所有하고 있는 資産은 이들이 營業活動을 繼續적으로 遂行하는데 必要한 것이며, 또한 이들이 그 資産을 換價處分하여 美國父會社의 「달러」貨로 交換할 것을 前提로 하지 않는 이상, 換率差損益을 實現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自명한 理致이다.⁹⁾

上記한 바와 같이 財務諸表의 換算에서 생기는 換率差損益을 未實現損益이라고 하는 見解는 상당히 優勢하다. 그런데 會計實務面에서 未實現損益의 處理方法은 各樣 各色이다.

그러면 이러한 未實現損益의 會計處理方法을 具體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換率差損益을 正常的인 項目(ordinary items)과 非正常的인 項目(extraordinary items)로 區分하는 問題부터 알아 보기로 한다.

會計原則審議會(Accounting principles Board)는 “特別한 事件과 去來活動”에서 發生하는 巨額(Material)의 利益과 損失을 “特別項目”으로 報告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特別한 事件과 去來活動이란 「주로 基礎的인 發生事件의 性質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企業의 典型的이고도 慣習의으로 일어나는 營業活動과는 顯著하게 區別되는 性質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企業의 어떠한 正常的인 營業活動을 評價하는 過程에

8) H.A. Finney & H.E. Miller, *op.cit.*, p.511.

9) 金英晞, “財務諸表의 번역”, 韓國經營學會刊「經營學研究」第4輯(1975年 2月), p.137.

있어서도 反復的으로 發生하고 經常的인 要因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重要性 있는 事件과 去來活動이다」라고 말한다.¹⁰⁾ 또한 會計原則審議會는 特別項目으로 取扱될 수 있는 事件의 一例로서, “外貨의 平價切下”를 들고 있다.¹¹⁾ 그러나 平價切下라는 事實만으로서 劃一的으로 特別項目으로 取扱하는 것은 妥當하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약간의 平價切下나 平價切上을 特別項目으로 보는 見解도 있으나 正常的인 換率變動으로 보는 見解도 있다.

結果的으로 一部分이나 全般的인 換率上昇이 特別한 事件에 속하느냐의 여부는 換率上昇이 과거의 換率上昇幅과 比較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와, 그러한 上昇의 幅이 未來에도 繼續的으로 發生되느냐의 여부가 먼저 前提條件으로 決定되어야 한다고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다.¹²⁾

다음에는 이러한 換率變動으로 부터 發生된 利益 또는 損失을 移延시키는 것과 關聯하여 세가지의 主張이 서로 對立되고 있다. 즉, 未實現利益만을 移延시키자는 主張과 換率變動에서 일어나는 모든 未實現損失을 移延시켜야 한다는 主張 및 어떠한 未實現損失도 移延되어서는 안된다는 主張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理論的으로나 實務面에서 一般的으로 優勢한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은 모든 換率差損失은 利益과 對應시켜야 되나, 換率差利益의 경우에는 移延하는 것이 좋으며 可及의 以前에 計上된 換率差損失과 相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¹³⁾

一般的으로 期間損益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費用은 發生主義(accrual basis)에 의하며, 收益은 保守主義的인 立場을 取하여 實現主義에 의하여 認識·測定한다. 그런데 換率의 有利한 變動에 의하여 發生한 換率差利益을 認識하는데 있어서의 販賣基準과 같이 當期에 實現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實情이며, 이러한 收益의 現實的인 實現基準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換率差利益은 이를 充當金의 性格을 갖는 計定으로 處理하여 次期로 移延시켜 놓고, 次期에 換率의 不利한 變動으로 인하여 發生할지도 모르는 換率差損失을 填補하도록 하는 것이 妥當한 方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未實現換率差損失은 이를 當期の 利益에 對應시켜야 한다는 主張亦是, 保守主義的인 安全性思考에 立脚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換率差損失이 上記한 平價切下와 같은 重要的인 換率의 變動으로 인한 경우에, 이에 대한 會計處理方法에 대하여 많은 論爭이 일고 있다. ARB 第43號에서는 平價切下와 같은 重要的인 換率의 變動으로 인한 換率差損失은 損益計算書의 當期純利益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剩餘金計算書에서 處理하도록 勸告하였다.¹⁴⁾ 그러나 APB 意見書 第9號에서는 平價切下로 인한 換率差損失

10) Leonard Lorenzen, *op. cit.*, p.54.

11) *Ibid.*, p.54.

12) *Ibid.*, p.55.

13) *Ibid.*, pp.55~61.

14) H.A. Finney & H.E. Miller, *op. cit.*, p.519.

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두 損益計算書에 表示하도록 하였으며, 特別項目이 아닌 經常項目이라는 것을 明示하였다.¹⁵⁾

上記와 같은 諸論爭點을 整理하여 볼때에, 外國子會社가 그 所在國에서 永續的으로 存續할 繼續企業이라는 것을 前提로 한다면, 換率變動으로 인한 未實現利益은 이를 移延시키고 未實現換率差損失은 實現換率差損失과 더불어 費用으로 認識·測定한다는 것은 論理上 심히 一實性を 缺하고 있는 極端的인 保守主義的 思考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外國子會社나 支店이 所有하고 있는 資産을 換價處分하여 投下資本을 回收할 것을 前提로 하지 않는 以上, 換率變動으로 인한 實現損益은 이를 當期純利益에 對應시키나 未實現損益은 이를 貸借對照表에 移延計上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會計處理方法中 어떠한 方法이 가장 妥當한 方法이라고 斷定하기는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換率變動에서 생기는 未實現損益은 이를 一律的인 方法으로 處理할 것이 아니고 諸方法의 相對的인 長點을 比較評量하여 當該企業의 立場에서 보아 가장 妥當하다고 생각하는 方法을 使用할 것이다.¹⁶⁾

나. 우리나라의 換率差損益에 대한 會計處理方法

지금까지 換率差損益의 會計處理方法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74年 6月 18日에 韓國公認會計士會에서 發表한 「意見書」意見 第3號를 嚆矢로 하여 74年 7月 18日에 大統領令 第7199號로 公布한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 및 75年 4月 17日에 財務部令 第1098號로 公布한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과 法人稅法施行令 第38條의 2에 規定한 「外換債務에 대한 評價損益」에서 斷片的인 內容이 提示되어 있다.

本論稿에서는 換率差損益에 관한 會計處理方法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는 內容을 上記의 規定順序에 따라 分析하고, 이를 批判的인 立場에서 考察하고 자 한다.

1. 「意見書」意見 第3號의 內容

韓國公認會計士會에서는 1974年 6月 18日에 「意見書」意見 第3號¹⁷⁾를 통하여 「外貨資産 및 外貨負債의 評價와 換率差損益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發表하였다. 評價基準, 評價方法과 더불어 換率差額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發表한 同意見은 貨幣的 資産과 貨幣的 負債, 有形固定資産의 取得을 위한 長期外貨負債 및 再評價前에 部分償還한 外貨負債에 대하여 發生한 換率差額의 會計處

15) 南相午, 前掲書, p.62.

16) 金英晴, 前掲書, p.138.

17) 다음에는 同意見이라고 함.

理에 대하여 記述하고 있다.

먼저 貨幣的 資産과 貨幣的 負債를 評價한 後에 發生한 換率差額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提示된 內容에 의하면, “上記한 「二」의 評價方法¹⁸⁾으로 評價한 다음 그 差損益은 相計하고 그 殘額이 (1)損失인 때에는 當期損失로 處理하고 (2)利益인 때에는 이를 計上하지 않는다. (殘額이 利益인 때에는 評價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表示한다.)”고 되어 있다.

同意見에 提示된 換率差額은 實現·未實現의 여부를 區分하기가 애매한데, “下記한 「二」의 評價方法으로 評價한 다음 그 差損益을 相計하고”라는 內容을 보면, 評價한 다음의 換率差額을 實現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換率差損益을 相計한 殘額이 損失이면 當期損失로 處理하지만, 利益인 때에는 이를 計上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徹底한 保守主義的 思考方式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 殘額이 損失인 때에는 當期損失로 處理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具體的으로 經常項目에 속하는 營業外費用으로 處理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特別項目인 特別損失로 處理한다는 것인지 明示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換率變動이 극심한 經濟與件下에서는 換率變動으로 부터 생기는 利益보다는 損失이 發生하는 경우가 많을 진대, 每年마다 損失을 當期損失로 計上함으로써 제대로의 經營成績이 과연 어느 程度로 損益 計算書에 反映될 것인가를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外貨로 表示된 計定이나 財務諸表를 換算함으로써 發生한 換率差損益을 일단 未實現損益으로 보아 相計하지 말고,¹⁹⁾ 換率差損失에 대하여는 重要性原則에 의거하여 經常項目이나 特別項目으로 適切하게 區分하는 同時에 이에 대한 換率差損失充當金計定을 設定하고, 換率差利益에 대하여는 次期로 移延하여 次期에 發生할지도 모르는 換率差損失을 填補하데 利用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에 同意見은 有形固定資産의 取得을 위한 長期外貨負債를 評價함으로써 發生한 換率差額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1)換率差損益은 換率調定計定(借邊 또는 貸邊)으로 處理하고 이를 損益去來로 處理하여서는 아니된다. (資産再評價法을 前提로 한다) (2)換率調整計定이 ①借邊인 경우에는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時 再評價差額에서 이를 控除한다. (控除後殘額은 再

18) 同意見의 評價方法에 의하면,

1. 貨幣性 資産과 貨幣性 負債決算日 現在의 換率로 評價한다.
2. 非貨幣性 資産(在庫資産, 固定資産 및 投資資産) 取得日 또는 發生日 現在의 換率로 評價한다. 다만 在庫資産의 경우에는 取得日 現在의 換率과 決算日 現在의 換率中 低價인 것을 適用한다.

19) 換率變動에 따라 發生한 換率差損益을 相計한다는 것은 總額主義의 會計處理方式에 엄격히 違背된다. 물론, 相計하여 殘額단으로서 會計處理하는 純額主義를 採擇한다고 하더라도 註記나 註釋을 利用하여 이에 대한 內容을 別途로 表示할 수는 있다. 그러나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關한 規則」에 의하면 이와 같은 內容을 註記하거나 註釋하는게 대하여 전혀 及及되어 있지 않다.

評價積立金으로 計上한다) ②貸邊인 경우에는 外貨負債의 全額을 償還時에 이를 當期收益으로 計上한다. (3)貸借對照表의 表示 ①換率調整計定이 借邊인 경우에는 有形固定資産의 다음 또는 有形固定資産의 該當最終科目의 다음에 配列한다. (有形固定資産의 小計에 이 計定을 合算表示한다) ②換率調整計定이 貸邊인 경우에는 有形固定資産의 評價計定으로 差減表示하되 配列은 前項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첫번째의 有形固定資産의 取得을 위한 長期外貨負債에서 發生한 換率差損益은 換率調整計定을 設定함으로서 次期로 移延시키는 合計處理方法을 勸獎하는 反面에 이를 當期損益에 計上하는 方法에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여 一貫性있는 會計處理方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有形固定資産의 取得을 위한 長期外貨負債에서 發生한 換率差損益은 어느 경우보다도 重要性이 크다는 점을 考慮하여 그와 같은 會計處理를 要求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번의 換率調整計定이 借邊에 나타나는 경우에, 이를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差額에서 控除하고, 殘額은 再評價積立金으로 計上토록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內容은 資産再評價法에서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²⁰⁾ 그리고 換率調整計定이 貸邊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貸借對照表 貸邊에 同計定을 計上하였다가 外貨負債의 全額을 償還할 때에 가서 이를 當期收益으로 計上토록 함으로서, 外貨負債의 部分償還時에는 原則적으로 이를 當期收益에 計上하는 것을 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外貨負債의 全額을 償還하는 會計期間의 經營成績은 어느 會計期間보다 良好한 結果를 나타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利用하는 利害關係者에게 그릇된 判斷을 가져오게 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外貨負債의 全額償還을 收益實現의 基準으로 하기 보다는, 外貨負債의 全額에 대한 部分償還金額의 比率을 每期마다 구하고, 이를 換率調整計定에 乘하여 얻어진 金額을 當期收益으로 計上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셋째의 換率調整計定을 貸借對照表에 表示하는 데에 따른 形式的인 問題는, 借邊 또는 貸邊에 計上된 換率調整計定이 有形固定資産의 該當科目과 關聯하여 配列하는 것이 貸借對照表의 區分·配列·分類의 原則에 適應한 表示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同意見은 再評價前에 部分償還한 外貨負債에서 發生한 換率差額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1)償還部分에 該當하는 評價損失은 當期損失로 處理

20) 資産再評價法 第28條 第2項에 의하면, “再評價積立金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 다만 第2號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再評價日 以後 終了하는 事業年變의 益金에 算入할 수 있다. 1. 再評價稅의 納付 2. 資本에의 轉入 3. 再評價日 以後 發生한 貸借對照表상의 移越缺損金의 填補 4. 換率調整計定상의 金額과의 相計”라고 規定하고 있다.

하고 (2)償還部分에 該當하는 評價利益은 當期收益으로 處理한다.”고 提示하고 있다. 이는 이미 再評價하기 前에 部分償還한 外貨負債에서 發生한 評價損失은 實現된損失으로 보아 當期損失 또는 當期收益으로 處理하도록 勸告하고 있다. 그러나 上記한 바와 같이 貨幣的 資産과 貨幣的 負債를 評價하여 發生한 利益은 이의 計上을 許容치 않으면서 償還部分에 該當하는 評價利益은 當期收益計上을 許容하는 것은 體系的으로 矛盾이 아닐 수 없다. 물론, 再評價前에 部分的으로 償還이 끝난 外貨負債에서에서 發生한 評價利益이라는 것이 考慮되어 이를 當期收益으로 處理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당히 政策的인 立場에서 나온 產物이라고 볼 수 있다.

2.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關한 規程」의 內容

1974年 7月 18日에 大統領令 제7199號로 公布된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關한 規程」은 第32條에 「外貨資産 및 負債의 評價」에 대하여, “①外貨資産은 適切한 換率로 評價한 경우에 發生한 外貨評價損失을 控除한 價額을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한다. ②外貨負債는 適切한 換率로 評價한 경우에 發生한 外貨評價損失을 加算한 價額을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한다. ③제 2 項의 外貨評價損失은 外貨負債調整計定을 設定하여 當該·外貨負債를 償還할 때마다 그 償還金額에 該當하는 金額을 償却하는 方法으로 處理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同規程은 外貨資産 또는 外貨負債를 決算期때마다 適當한 換率에 의하여 評價함으로써 發生한 外貨評價損失自體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區別하지 않고 劃一的인 處理方法을 規定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經濟與件下에서는 換率變動은 歷史的인 經濟發展趨勢에 비추어 볼 때에 거의 每年 年例行事처럼 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區別은 實益이 없다고 하는 主張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區分이 可能하다고 하더라도 모두 重要性의 原則에 의하여 區分, 處理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보는 정도로 曖昧하다. 다음에는 同規程에 規定된 內容을 예를 들어 說明하기로 한다.

(例 1) 外貨現金 元貨表示金額은 ₩20,000,000 (\$ 50,000, \$ 1=₩400)인데, 換率 \$ 1=₩385으로 評價 計上하다.

(借) 外貨評價損失 750,000 (貸) 外貨現金 750,000

(例 2) 제 3 기 3月 1日에 外貨長期借入金을 調達하다

그런데, 元貨表示金額은 ₩19,000,000 (\$ 50,000, \$ 1=₩380)이고, 3年据置 5年分割償還, 利率年 6%, 利率年 1回 每年 2月 28日 支給이다.

(借) 現金豫金 19,000,000 (貸) 外貨長期借入金 19,000,000

(例 3) 제 3 기 12月 31日 換率 \$ 1=₩385, 利率 ₩962,500

(\$ 50,000 × 0.06 × $\frac{10}{12}$ × 385) 을 計上하다.

(借) 支給利率引料 962,500 (貸) 未支給利率 962,500

그리고 同時에 換率變動으로 인한 外貨評價損失 ₩250,000 (₩50,000×(385-380))을 外貨負債調整計定으로 設定하여야 한다.

(借) 外貨負債調整計定 250,000 (貸) 外貨長期借入金 250,000

上記의 外貨負債調整計定은 外貨負債를 償還할 때마다 그 償還金額에 該當하는 金額을 外貨負債調整計定償却이라는 營業外費用으로 處理하게 된다.

그런데 同規程에는 外貨資産 또는 外貨負債를 決算期마다 適當한 換率에 의하여 評價함으로써 發生할 수도 있는 外貨評價利益²¹⁾에 대하여는 전혀 規定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外貨評價損失이 問題이지, 外貨評價利益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見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考察할 것은, 同規程中 外換의 會計處理에 관한 內容은 質的으로나 量的으로나 너무나 未洽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더욱이 同規程中 證券去來法 第126條 8의 規定에 의하여 上場法人 기타 同法의 適用을 받는 者의 會計와 公認會計士의 監査에 統一성과 客觀性을 賦與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함으로서, 그 갖는 本來의 意義와 社會的 役割이 至大함에 비추어 볼 때에,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斷片的인 內容을 規定하는 程度로서 滿足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上場法人들에게는 最高의 指導原理인 同規程은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좀더 具體的이면서도 廣範한 內容을 提示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야 할 것이다.

3.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의 內容

1975年 4月 17日에 財務部令 第1098號로 公布된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은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하여 斷片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本論稿는 同規則에 規定된 順序에 따라 分析, 考察하고 자 한다.

同規則은 第20條에서 「外換差益」에 대하여, “外換差益은 外貨資産의 回收 또는 外貨負債의 辨濟時에 發生하는 差益中 非常的인 것을 除外하고는 營業外收益으로 記載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外貨資産을 回收할 때에 元貨回收價額이 그 外貨資産의 帳簿價額보다 큰 경우와, 外貨負債를 辨濟할 때에 元貨償還價額이 그 帳簿價額보다 낮은 경우에 發生하는 外換差益에 관하여 經常的 營業去來에서 發生한 外換差益은 營業外收益으로 處理하고, 外換差益中 非經常的인 것은 特別利益으로 處理토록 規定한 內容이다.²²⁾

21) 外貨評價利益이 發生하면 外貨評價損失과는 달리 外貨資産인 경우에는 評價利益 만큼 引上된 金額으로 評價하고, 外貨負債인 경우에는 評價利益만큼 引下된 金額으로 評價된다.

22) 李海東,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 解說”, 大韓稅務協會刊 「會計와 稅務」, 1974年 8月號, p.56.

“①外貨借入金이 換率變動으로 인하여 借入當時의 元貨表示額(元貨記帳額)과 償還하는 元貨金額에 差損益이 생긴 경우에 그 差損益은 다음 名號의 規定에 의하여 處理한다. (新設 71.12.30) 1. 外貨借入金으로 固定資産을 買入·建設한 때에는 그 差損金은 換率調整計定을 設定하여 이를 殘存償還期間에 따라 均等하게 償却하고 그 差益金은 當該事業年度の 益金으로 計上한다. 2. 前號以外的 경우에는 各 事業年度の 償還金額에 該當하는 差損益을 當該事業年度の 損金 또는 益金으로 計上한다. ②第1項 第1號의 換率調整計定上の 金額을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積立金과 相計處理한 경우에는 相計한 金額을 換率調整計定上の 金額으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新設 74.12.31) ③第1項의 元貨記帳額은 外貨借入金を 借入한 날 現在의 對顧客外國換買入率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으로 하고, 償還하는 元貨金額은 償還한 날 現在의 對顧客外國換賣渡率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新設 74.12.31)”고 規定하고 있다.

法人稅法上 固定資産의 買入 또는 建設에 充當한 外貨長期借入金에 대한 評價損失은 損金으로 認定하지 않고, 當該外貨長期借入金を 分割償還하는 경우에 發生한 外換差損을 換率調整計定借邊에 記載하고, 그 殘存償還期間에 따른 均等償却額을 損金으로 認定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說明하기 한다.

(例 1) 73.4.1. 美國 ABC株式會社로 부터 \$ 100,000을 借入하다. 償還期限 10年, 償還方法 10年分割償還, 利率年 8%, 當該外貨長期借入금은 A機械 買入에 充當하다. 借入當時의 對顧客外國換買入率은 \$1=₩390이다.

(借) 現金豫金 39,000,000 (貸) 外貨長期借入金 39,000,000

(例 2) 73.12.31. 外貨長期借入金에 대한 利子未支給額을 計上하다. 換率 \$1=₩392인바, 同時에 이에 대한 評價損失을 計上하다.

$$₩392 \times \$ 100,000 \times 8\% \times \frac{9}{12} = 2,352,000$$

(借) { 支給利子割引料 2,352,000 (貸) { 未支給利子 2,352,000
 { 外貨評價損失 200,000 { 外貨長期借入金 200,000

이 경우에 73年度分 稅務申告時, 外貨評價損失 ₩200,000은 損金不算入한다.

(例 3) 74.4.1 外貨長期借入金中, \$ 10,000을 分割償還하고 利子를 支給하다. 이때의 對顧客外國換賣渡率은 \$1=₩394이다.

(借) { 外貨長期借入金 3,900,000 (貸) 現金預金 3,940,000
 { 換率調整計定 40,000

그리고 支給利子 ₩394 × \$ 100,000 × 8% = 3,152,000을 手票發行하여 支給하다.

(借) { 未支給利子 2,352,000 (貸) 現金預金 3,152,000
 { 支給利子割引料 800,000

(例 4) 74.12.31, 外貨長期借入金에 대한 利子未支給額을 計上하다. 換率

\$ 1 = ₩400인바, 同時에 이에 대한 評價損失을 計上하다.

$$₩400 \times \$ 90,000 \times 8\% \times \frac{9}{12} = 2,700,000$$

(借)	{	支給利子割引料 2,700,000	(貸)	{	未支給利子 2,700,000
		外貨評價損失 720,000			外貨長期借入金 720,000

이 경우에 74年度分 稅務申告時, 外貨評價損失 ₩720,000은 損金不算入한다.

V. 公開表示의 基準

財務諸表의 外貨表示에 있어서 必然的으로 어느 範圍까지 財務諸表의 註釋에 外貨換算의 方法, 適用될 換率, 換率差損益의 移延 또는 損失處理方法 등에 關해서 記載해야 되는 가의 問題가 提起된다. 이에 대하여도 美國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로 나누어 考察하고 자 한다.

가. 美國의 公開表示의 基準

財務會計標準審議會(FASB)에서는 1973年 12월에 財務會計標準報告書 第1號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No.1)을 發表하였다. ²⁴⁾ 이와 같은 報告書를 發表하게 된 動機로서는 適用될 換率의 繼續의인 再整備, 會計實務上의 多樣性, 財務諸表利用者의 意思決定目的에 有用한 情報을 傳達하는데 있어서 必要한 公開事項의 缺如, 一部の 會社들이 外換의 會計處理에 關하여 公開하고 있는 限定된 情報 등에 대한 問題點을 改善하려는 움직임이 拍車를 加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FASB에서 發表한 報告書의 內容을 中心으로 外貨換算에 關한 會計政策으로는 어떠한 것이 包含되어야 할 것인가를 考察하여 본다. ²⁵⁾

첫째로, 다음과 같은 事項에 대한 外貨換算政策이 公開되어야 한다.

(1) 流動換率과 歷史換率로 換算한 貸借對照表項目, (2) 損益計算書項目을 換算하는데 使用한 換率, (3) 先物換去來에서 發生한 換率差損益에 대한 認識의 時期를 決定하는 問題, (4) 換率差損益에 대한 會計處理方法 등이 公開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예를 들면 換算方法으로서 貨幣性·非貨幣性法을 使用하는 會社는 다음과 같이 記述할 수 있다.

在庫資産, 工場設備資産, 移延資産, ……은 歷史換率을 適用하였다. 기타

24) FASB에서는 同報告書를 發表하기 前에는 會計原則審議會(APB)나 會計調查公報(ARB) 등을 통하여 公開表示에 대한 基準에 關해서 斷片的으로 提示하여 왔다.

25) 이에 關한 資料는

FASB,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No.1, "Disclosure of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Information", Dec., 1973.* 참조

다른 資産과 負債는 流動換率을 適用하였다. 換率變動으로 인하여 發生된 換率差損益은 當期の 損益計算에 計上되었다. 先物換去來에서 생긴 利益 또는 損失은 決濟時點의 損益으로 認識되었다.

둘째로, 當該會計期間에 發生한 換率差損益에 대하여는 財務諸表에 總額으로 表示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ARB 제43호에서 勸獎한 換率差損益의 會計處理方法을 따르는 會社는 다음과 같이 記述할 것이다.

1973년에 美國의 ABC會社는 當期에 發生한 未實現換率差損失 \$12,345을 當期收益에 對應시켰다. 1974년에, ABC會社는 當期에 發生한 未實現換率利益 \$54,321中에서 前記의 未實現換率差損失 \$12,345은 填補하고 남은 殘額 \$41,976을 移延換率差利益計定을 設定하여 次期로 移延시켰다.

셋째로, 當該會計期間의 純損益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換率差損益이 언제 發生된 것 이냐에 關係없이 包括主義에 立脚하여 決定된 純損益의 計算過程을 公開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예를들어 보기로 한다.

當期の 事業年度에 發生한 換率差損益 \$100,000과 前年度の 換率調整計定中 \$10,000의 減價償却費를 當期の 期間損益을 決定하는데 함께 計上하였다.

넷째로, 貸借對照表에 計上된 移延換率差損益의 總額과 이의 分類方法을 公開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歷史換率을 適用한 長期受取計定과 長期支給計定이 만일에 流動換率을 適用함으로써 나타난 增減額을 公開하여야 한다.

여섯째로, 貸借對照表日字로 未決濟先物換去來에서 아직 認識되지 않은 損益을 公開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外貨換算에 관한 政策은 企業의 重要한 會計政策이므로 이의 公開表示를 要求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公開表示의 基準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外換의 會計處理에 관한 政策을 公開表示하는 것에 대하여 거의 論議되어 온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1975年 4月 17日에 財務部令 第1098號로 公布된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에 最初로 그 모습을 나타냈다.

同規則 第67條는 「外貨資産의 註記와 註釋」에 대하여, “①現金과 預金·받을어음·有價證券·出資金 및 기타의 資産으로서 外貨로 表示된 것은 當該 外貨金額을 註記하고 그 評價基準과 內容을 貸借對照表에 註釋으로 記載한다.

②外貨資産으로서 資産總額의 100분의 2를 超過하는 것은 이를 區分하여 記載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同規則은 第73條에 「外貨債務의 註記와 註釋」에 대하여, “①支給어음·長期借入金·社債 및 기타의 負債로서 外貨로

表示된 것은 當該 外貨金額을 註記하고 그 評價基準과 內容을 貸借對照表에 註釋으로 記載한다. ②外貨負債로서 負債 및 資本總額의 100분의 2를 超過하는 것은 이를 區分하여 記載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外貨資産 및 外貨負債에 대하여 貸借對照表에 元貨로 換算된 金額이 計上되어 있으므로 決算時의 事情이 變化됨으로서 元貨計上金額은 實際의 回收金額 또는 決濟金額과 다르기 때문에 註記 또는 註釋²⁶⁾記載를 하도록 規定한 것은 當然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同規則의 이에 대한 規定內容은 前述한 美國의 경우처럼 包括的으로 仔細하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實際로 外貨資産보다는 外貨長期借入金등의 外貨負債의 公開表示에 따른 註記 또는 註釋事項이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該當計定科目 다음에 그 外貨金額을 註記하고 또한 貸與處, 所屬國名, 貸與處名, 借款의 原始金額(外貨金額 및 元貨金額), 償還條件, 利子率, 借款時의 換率, 決算時의 換率, 未償還借款金額(外貨金額 및 元貨金額)등을 註釋으로 記載하여야 한다.²⁷⁾

結論의으로 換率變動 乃至 元貨 換算金額의 變動에 의하여 財務的으로 또는 損益에 重要한 影響을 주게 될 우려가 많으므로, 公開明示의 범위는 企業主를 비롯한 各種利害關係者들의 意思決定目的에 有用한 情報를 傳達할 수 있도록 包括的이고도 具體的인 內容이 提示되어야 할 것이다.

VI. 結 言

오늘날 大規模 企業의 國際的인 經營活動은 國際的인 財務報告의 必要性을 낳게 하였다. 이에 따라 財務諸表가 國家의 境界를 넘어서 外國의 利害關係者의 意思決定目的에 有用한 會計情報로서 利用되자면, 外貨로 表示된 計定이나 財務諸表를 換算하는데에 있어서의 諸般 會計處理節次가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外貨로 表示된 財務諸表의 計定科目과 金額을 換算할 경우와 形式的인 用語·樣式·作成方法에 있어서 提起되는 問題는 各國家間의 會計概念과 會計基準의 統一化 與否이다. 물론 이와같은 統一化 問題는 財務諸表를 公示하는 過程에서 어느 程度 이에 따른 會計處理方法이 明白히 나타나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26) 同規則 第5條는 「註記 및 註釋方法」에 대하여, “令 第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註記 및 註釋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註記는 財務諸表上의 該當科目 다음에 그 會計事實의 內容을 簡單한 字句 또는 數字로 괄호안에 表示하는 方法으로 한다.

2. 註釋은 財務諸表上의 該當科目 또는 金額에 記號를 붙이고 欄外 또는 別紙에 同一한 記號를 表示하여 그 會計事實의 內容을 簡潔明瞭하게 記載하는 方法으로 한다.

27) 李海東, 前掲書 9月號, p.127.

그리고 外換의 會換處理에 있어서 가장 中心이 될 수 있는 評價基準, 評價方法 및 換率差損益의 會計處理方法이다. 이는 評價基準과 評價方法에서 考察한 바와 마찬가지로 傳統的方法인 流動性·非流動性法보다는 貨幣性·非貨幣性法을 많이 適用하고 있다. 그러나 貨幣性·非貨幣性法도 그 自體가 完全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折衷한 折衷法이 台頭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은 流動性·非流動性法, 貨幣性·非貨幣性法, 折衷法은 歷史的 原價主義에 基礎를 둔 評價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大部分의 國家에서 貨幣價值安定의 前提下에 歷史的 原價에 의한 會計情報의 有用性을 強調하여 會計基準으로 삼고 있는 原價主義會計는 貨幣價值, 즉 貨幣購買力의 激甚한 變動으로 말미암아 會計情報로서의 有用性을 거의 상실할 程度의 危機에 놓여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會計學界 및 實務界는 貨幣價值安定의 假定에 立脚한 會計原則에 어떤 修正을 加할 것인가, 아니면 變動하는 測定單位를 基礎로 하여 새로운 會計原則을 形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苦心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論議되고 있는 바로는 從來의 原價主義를 固守하면서 物價指數에 따라 財務諸表를 修正하는 方法으로 問題解決에 努力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外換의 會計處理에 있어서의 評價方法도 이러한 與件의 變動을 現實의으로 認定하는 立場에서, 前述한 原價主義에 基礎를 둔 評價方法보다는 모든 資產·負債·資本項目을 貸借對照表作成日現在의 換率인 流動換率로 換算하는 流動換率法에 의한 評價方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將壽의 方向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評價方法과 더불어 換率變動으로 發生한 換率差損益의 處理方法에 대하여도 아직 確定的인 結論을 못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實情을 考慮하여 볼 때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外換의 會計處理에 대하여는 거의 研究結果나 實績이 未洽할 뿐더러 이에 대한 規定조차 斷片的인 內容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換率變動幅만 보더라도 對外的인 貨幣價值가 安定된 나라에서는 거의 想像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 規模가 큰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諸般與件을 考慮하여 이에 대한 評價基準, 評價方法, 그리고 換率差損益의 會計處理方法등에 대하여 좀더 包括的이고 具體的인 內容이 提示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